

의안번호	제 148 호
의 결 년월일	1997년 2월 28일 (제 61 회)

의결사항
원안가결

보은군이장신원보증조례개정조례(안)

제 출 자	보 은 군 수
년 월 일	1997. 1. 27.

기획감사실장 심사필 

보은군이장신원보증조례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4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7. 1.27.

제 출 자 : 보은군수

■ 제안이유

- 보은군이장신원보증조례는 이장의 임명에 관한 법규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 및 보은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조례로 『 이장의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규정 』 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음
- 동조례에 의하면 임명된 이장은 15일이내에 부동산 시가 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2인이상의 연대 보증인으로 작성된 신원보증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토록되어 있어 임명된 이장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고 내용이 현실의 행정환경에 맞지 않음
- 다만, 신원보증 방법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은 있으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신원보증 방법을 보증보험으로 단일화하고 이에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함

■ 주요골자

- 이장의 신원보증 방법을 보증보험으로 하여, 읍면장을 피보험인으로, 이장을 피보증인으로, 보험회사를 보증인하여 보험계약체결하여 운영
- 보증기간은 1년으로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고, 재정보증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하고
- 보증보험에 따른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급

■ 의안전문 : 따로 붙임

■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■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
- 보은군이장신원보증조례 제2조 내지 제7조
- 보은군이장임명예관한규칙

보은군이장신원보증조례개정조례(안)

보은군리장신원보증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장의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원보증) ① 이장의 임명 또는 그 사무를 담당할 날부터 15일 이내에 읍면장은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.

② 신원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보험은 읍면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이장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.

④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.

제3조(보증한도액) 제2조 규정에 의한 리장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.

제4조(보험료의 지급) 읍면장은 이장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읍면장은 이장의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,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이장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.

제6조(보증보험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) ① 읍면장은 이장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, 피보증인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이전 연대 신원보증서를 제출한 자는 이조례에 의한 신원보증인 된것으로 본다.

